

예산총칙

202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17,443,258	105,523,297
일반회계	3,068,086,362	92,042,590
특별회계	449,356,896	13,480,707
공기업특별회계	303,521,166	9,105,635
수도사업특별회계	101,469,977	3,044,09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051,189	6,061,536
기타특별회계	145,835,730	4,375,07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50,672	184,520
교통사업특별회계	38,479,885	1,154,396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6,764,721	802,94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900	87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50,135,253	1,504,05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5,200	3,156
성복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0	0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4,197,099	725,91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다만,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399,03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9,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